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09. 30(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성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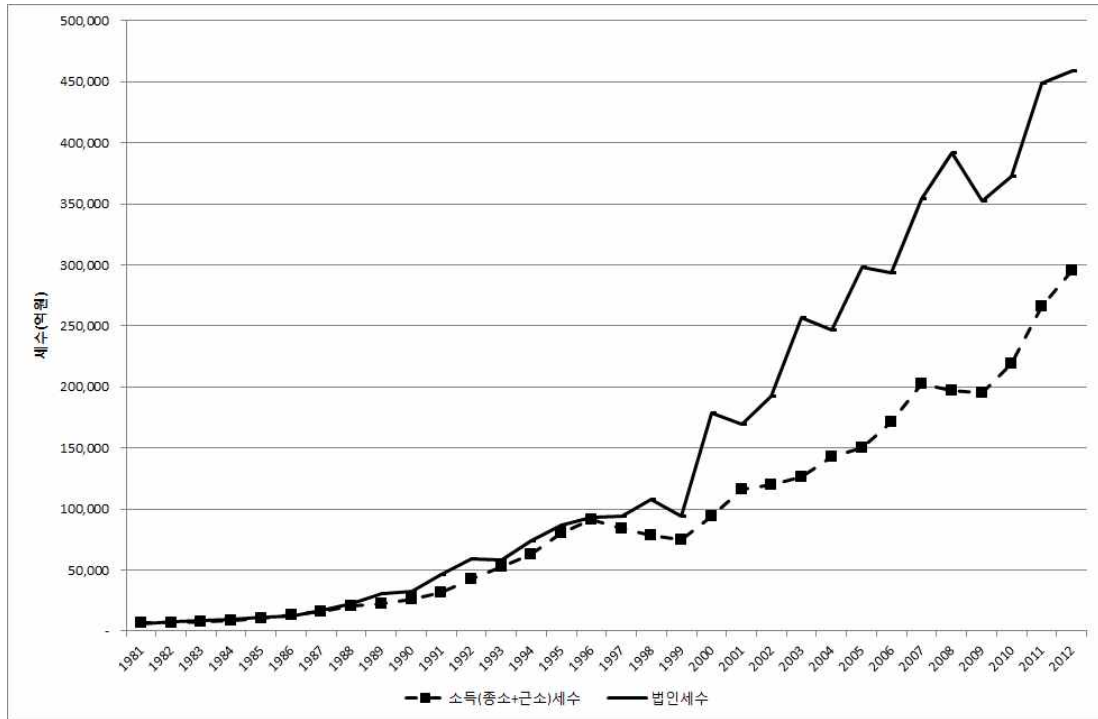
I 배경 및 문제점(당면과제 중심으로 작성)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구분은 동일한 소득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1차 귀속자에 따른 구분으로 상호 이동 가능한 세원(예: 개인사업체 v.s 법인사업체)
 - 법인의 소득획득도 개인에게 배분되므로 궁극적 세부담자인 개인이 경제적 부담에 따라 소득의 1차 귀속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두 세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접근 필요
 - 소득의 1차 귀속자 변경은 개인의 법인 설립 여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곧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의 세원이동을 의미
 -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연구에서 두 세목간의 세원연관성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음
 - 전병목(2006)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탄력성 추정을 통해 다른 세목으로의 세원이동 가능성을 포함하였으나 구체적 요인별 구분은 시도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고 법인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경제내 소득배분에 있어 노동소득의 비율,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59.7%(2012)로 2011년 기준 미국 67.3%(2011), 독일 66.9%, 일본 70.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2000년대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법인소득세율 인하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

2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성에 관한 연구

[그림 1]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추이



- 소득배분 구조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법인부문의 경우, 경제전망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당부분 유보하고 있어 경제활력 저하의 한 원인
 - 변화폭이 상당히 안정적인 민간소비의 역할이 줄어들음에 따라 국가경제의 변동성 역시 증가하는 문제

- 개인소득세 부담과 법인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야기할 수 있는 세원의 이동에 대한 외국의 연구는 다수 존재
 - Dual Income Taxation 전환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 세율격차가 커짐으로 야기된 세원이동에 대한 실증분석
 - 스웨덴 : Alstadsater, Annette and Martin Jacob(2012), 핀란드 : Alstadsater, Annette and Knut Reidar Wangen(2010) 등
 - 분석결과 높아진 노동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 법인 등의 설립이 증가하여 법인으로의 세원이동 확인
 - 미국의 1980년대 개인소득세 세율의 대폭적 인하가 야기한 법인소득의 개인부문이동에 대한 실증분석

- Gordon, Roger and Joel Slemrod(1998) 등

□ 소득과세에서 세원(소득)이동이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

○ 초과부담(Excess Burden)의 증가

- 개인과 법인간의 소득이동을 위해서는 기존과 달리 다른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에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됨
- 이러한 추가적 비용은 사회적으로 볼 때 조세제도로부터 유발된 불필요한 비용으로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을 증가시킴
 - 예: 법인설립비용, 세무 컨설팅(Tax planning) 비용 등

○ 소득분배 및 관련 통계왜곡

-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세부담 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기대 편익이 크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일 확률이 높으므로 소득이동은 소득분배개선에 악영향
- 동일한 소득수준에서도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과세 형평성 문제 야기
-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낮아 개인소득이 법인부문으로 이동하였는데(즉, 법인이익 증가와 배당소득 증가), 이를 기업활동 활성화 등으로 해석하는 오류 가능성 증가
-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개선 통계는 소득이동에 의한 결과를 소득분배 변화로 해석하는 오류
- 그러므로 소득이동의 존재여부는 관련 통계의 이용 및 해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세수추정의 오차증가

- 세부담이 낮은 부문으로 세원이 이동하게 되면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보다 세수는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며 부문별 세입의 오차는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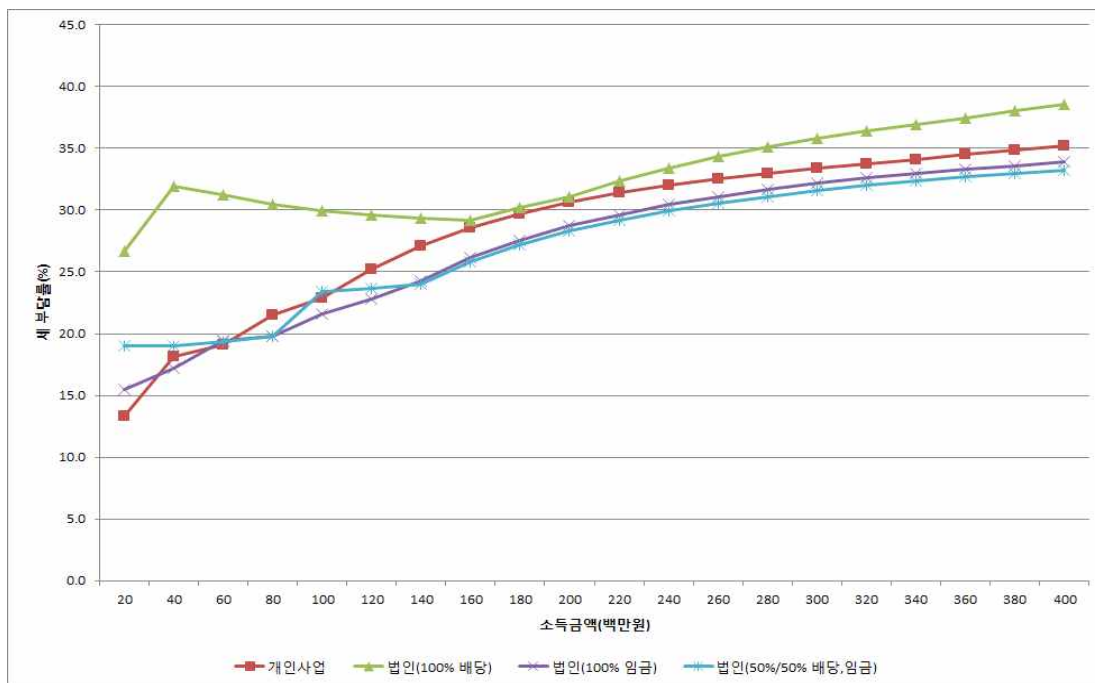
□ 소득세원의 이동유인을 검증하고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부담 변화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II

조사 및 분석결과(연구진이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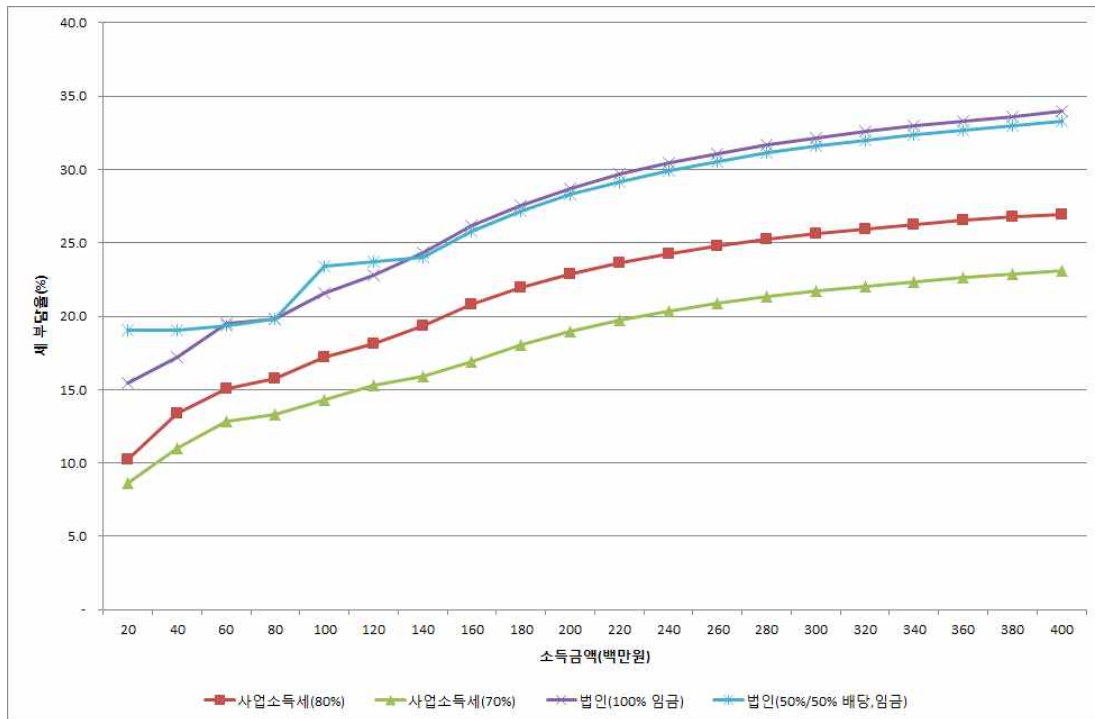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제와 법인소득세제상 세부담을 고려할 때 두 세목간 소득이동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유인 존재
 - 보상형태에 따른 소득수준별 세부담 비교에서 개인소득보다 법인을 통한 보상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
 -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률을 70~80%로 가정할 경우 여전히 개인사업의 형태가 세부담이 가장 낮은 대안
 - 부분적으로 소득과약률이 낮은 업종의 경우 여전히 개인사업체로의 유지가 유리할 수 있으나 점차 그 여지는 줄어들고 있음
 - 현재의 높지만 줄어들고 있는 자영부문 종사자 비중을 설명하는 한 요인

[그림 2] 소득형태/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률(사회보험료 포함, %)



주: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축의 소득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총 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전 이익과 고용비용(즉,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의 합

[그림 3] 소득형태/소득수준/소득과약률에 따른 세부담률(사회보험료 포함, %)



주: 사업소득세(80%)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80% 수준을 의미.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로축의 소득금액은 개인사업의 경우 총 소득금액, 법인은 법인세전 이익과 고용비용(즉,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의 합

- 개인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부담(최고세율 기준)보다 높아져 소득이동의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되는 소득수준은 2012년 기준 약 6,300만원에 불과¹⁾
 - 법인세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이동의 경제적 유인을 갖는 소득수준은 더욱 낮아져 상당수 개인사업자가 소득이동의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됨
 - 평균 국민소득수준과 비교한 상대적 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 기준 평균 국민소득의 2.5배에 불과
 -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으로의 경제적 유인을 가짐

1) 법인에 소득을 두고 상당 정도와 기간을 통해 개인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배당에 대한 세율을 고려하지 않음. 배당에 대한 세율을 고려할 경우, 대주주의 법인 이익배당에 대한 세부담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로 인해 언제나 개인소득세 부담보다 같거나 높아지게 됨

6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성에 관한 연구

<표 1>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단위: %, %p,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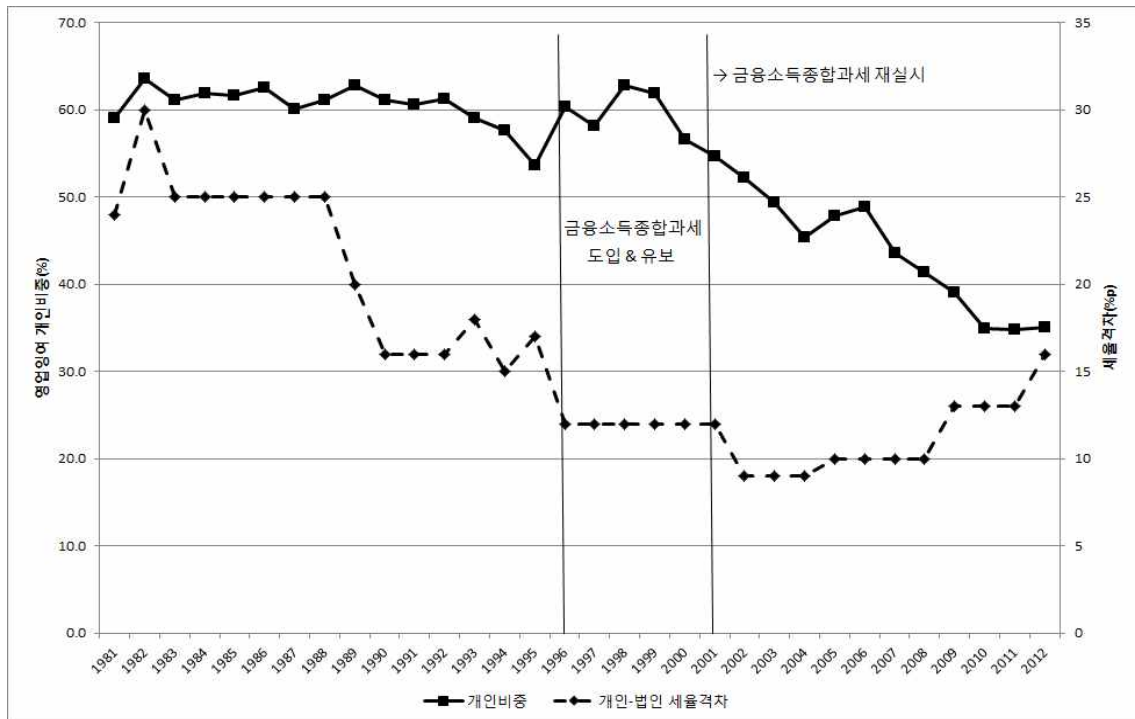
연도	소득세 최고세율(θ_{\max})	법인세		소득-법 인 세율격차	소득 수준 $\theta \geq \tau_{\max}$	1인당 국민소득
		최고세율(τ_{\max})	최저세율			
1981	62	38	22	24	-	124
1982	60	30	20	30	1,340	141
1983	55	30	20	25	1,750	164
1984	55	30	20	25	1,750	185
1985	55	30	20	25	1,750	205
1986	55	30	20	25	1,750	238
1987	55	30	20	25	1,750	280
1988	55	30	20	25	1,750	332
1989	50	30	20	20	1,978	373
1990	50	34	20	16	2,578	446
1991	50	34	20	16	3,038	534
1992	50	34	20	16	3,038	602
1993	50	32	18	18	3,860	674
1994	45	30	18	15	3,892	782
1995	45	28	16	17	3,962	905
1996	40	28	16	12	4,960	1,007
1997	40	28	16	12	5,060	1,094
1998	40	28	16	12	5,060	1,064
1999	40	28	16	12	5,060	1,163
2000	40	28	16	12	5,360	1,277
2001	40	28	16	12	5,405	1,372
2002	36	27	15	9	5,537	1,514
2003	36	27	15	9	5,563	1,604
2004	36	27	15	9	5,589	1,726
2005	35	25	13	10	5,632	1,796
2006	35	25	13	10	5,632	1,882
2007	35	25	13	10	5,632	2,010
2008	35	25	11	10	6,263	2,113
2009	35	22	11	13	6,316	2,175
2010	35	22	10	13	6,316	2,378
2011	35	22	10	13	6,316	2,488
2012	38	22	10	16	6,316	2,559

주: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높아지는 소득수준은 1인 소득자에 대해 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도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2013. 6)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 영업잉여중 개인의 비중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세부담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득과약률도 상승하게 되자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데 이 기간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격차도 점차 확대

[그림 4] 영업잉여중 개인의 비중과 개인-법인 소득세 최고세율 격차($\theta_{\max} - \tau_{\max}$)



주: 법인의 영업잉여는 비금융 법인기준이며 개인의 영업잉여는 개인 및 비영리단체를 포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국민소득계정』, 2013

- 법인소득의 변화에 대한 세율격차의 영향을 분석하여 소득이동 여부를 검증
 - 법인화에 대한 영향은 자산이동 여부를 통해 검증하고, 노동에 대한 보상방법 변화는 자산이익률의 변화를 통해 분석

□ 실증분석 모형은 Gordon and Slemrod(1998), Goolsbee(1998, 2004)를 수정²⁾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

$$y_{i,t} = \beta_0 + \beta_1 TD_{i,t} + \beta_2 MG_i + \beta_3 (TD_{i,t} \times MG_i) + \beta_4 Oth_{i,t} + \epsilon_{i,t}$$

2) 원 모형은 자료를 조정하며 세율격차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 분석하였으나 저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소득이동이 용이한 경영형태(즉 소유자-경영인)를 분리하고 세율격차와의 결합변수를 포함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음

- $y_{i,t}$ 는 분석대상인 법인의 자산이익률, 자산수준
 - 자산수준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산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자산 수준을 명목 GDP 증가율로 할인
 - 즉, 각 연도별 기업자산 수준은 GDP 증가율과 동일한 증가율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는 자산수준변화는 경기변동, 세율격차, 소유주 경영 여부 등에 따라 설명
 - $TD_{i,t}$ 는 조세격차를 나타내는 변수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θ_{max}) - 법인소득세 최고세율(τ_{max}))이며 MG_i 는 사업체의 경영형태 변수(소유주 경영 =1, 기타 =0)
 - 세율격차($TD_{i,t}$)와 경영형태(MG_i)의 곱으로 표현된 변수($TD_{i,t} \times MG_i$)는 소유주 경영일 때 소득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포착하기 위한 변수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2005, 2007, 2009)을 이용하여 분석
- 자산이동 없는 소득만의 이동을 검증하기 위한 자산수익률(ROA) 분석 결과 소유주가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세율격차가 커질수록 법인의 자산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 가능
- 추정계수의 크기도 소규모 법인일수록 크게 나타나 소득이동의 용이성과도 부합
 -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의 소유주-경영자가 개인사업과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음

<표 2> 자산수익률에 대한 세율격차의 영향

	전체 사업체		자산 50억 이하		자산 50~100억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	-0.0087***	0.001	-0.0979**	0.015	-0.0199***	0.000
Mg	-0.0580	0.331	-1.2044	0.187	-0.0746	0.466
(TD×Mg)	0.0012	0.738	0.0516	0.273	0.0117*	0.056
D2005	0.1991***	0.000	2.4305***	0.003	0.2841***	0.002
D2007	0.1171***	0.010	0.9543	0.227	0.2245**	0.020
D2009	0.2263***	0.000	2.0901**	0.012	0.2973***	0.003
Prob.>Chi2	0.0000		0.0061		0.0000	
No. of Obs.	1,542		96		159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자산이동과 함께 일어나는 세원이동을 검증하기 위해 자산이동 여부를 분석
 - 사업체 형태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자산과 함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개인부문에서 법인부문으로 이동
 - 종속변수는 명목 GDP 증가율로 할인된 자산수준

- 분석결과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격차가 증가할수록 법인으로의 자산이동이 유의미하게 발생
 - 다만 자산 50~100억의 법인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낮음. 전체 사업체에 대한 유의성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법인의 자산규모 보다 소유주 직접경영의 형태가 보다 조세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수 있음
 - 이 결과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율 격차가 1%p 증가하게 되면 소유자 경영인인 법인의 자산규모는 다른 법인에 비해 약 103.0억원 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
 - 이는 평균적인 소유주 경영 형태의 법인 (조정)자산규모(2009년 기준) 3,563억원³⁾의 2.89%에 달하는 수준
 - 소유주 경영의 형태를 취하는 법인 수 비중이 약 50%(2005년 45.5%, 2007년 48.2%, 2009년 54.9%)인 점과 소유주 경영 법인의 평균자산 규모가 그 외 법인의 2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법인 자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대비 0.66%p⁴⁾정도
 - 그 외 경영형태의 영향은 기업주 경영(즉 $Mg = 1$)일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증가 폭이 낮아지는데 이는 자산확대에 대해 소유자 경영자의 태도가 전문경영인에 비해 소극적임을 시사
 - 전반적인 법인들의 자산수준은 세율격차에 대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대상 시기의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법인활동의 축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
 - 이상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p인상(35%→38%)의 영향을 살펴보면 동 조치는 소득-법인세 세율격차를 3%p 확대시킴으로 법인부문의 자산을 기준연도 대비 1.99% 정도 증가 시킬 것으로 추정

3) 분석샘플을 2005년 경영형태 기준으로 2009년 (조정)자산규모를 계산하면 전체 샘플 평균은 1.0조원, 소유자 경영 법인은 3,563억원, 기타형태 법인은 1.55조원임

4) $23\% \times 2.89\% = 0.66\%$

- 이로 인해 증가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법인 자산증가분 × 소유주-경영 법인 자산이익률(2009년 0.05%) 만큼)⁵⁾ 개인 소득세율이 줄어들게 되고 전체 세수는 소득이동이 없을 경우보다 소득 이동분에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격차를 곱한 만큼 감소

<표 3> 자산수준에 대한 세율격차의 영향

	전체사업체		자산 50억 이하		자산 50~100억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TD	-10206.8***	0.003	-1639.482**	0.033	-65.44317	0.394
Mg	-364429***	0.000	-43274.86**	0.013	523.9966	0.712
(TD×Mg)	10301**	0.027	1589.755*	0.077	28.23097	0.739
D2005	381409.5***	0.000	48978.66***	0.002	1702.438	0.185
D2007	386381.2***	0.000	47404.51***	0.002	1753.603	0.189
D2009	417880.8***	0.000	50270.89***	0.002	1805.89	0.187
Prob.>Chi2	0.0000		0.0178		0.0000	
No. of Obs.	1,542		96		159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사업자들이 개인부문과 법인부문의 세부담 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소득만의 이동보다는 자산이동을 통한 소득이동을 시도하였음을 시사
 - 즉 자산을 개인부문에서 법인부문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수익에 대한 세부담을 자연스럽게 낮춘 것임
 - 개인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법인(TD×Mg)으로의 자산 이동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발생
 - 전체 샘플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들인 자산규모 100억 이하 샘플에서는 그 유의성이 낮아짐
 - 전반적으로 법인의 소유자이자 경영인(Mg=1)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증대에 소극적이었으나 세율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응하여 이를 보완
 - 이러한 변화는 높아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격차를 활용하여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개인 소득을 보관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고소득층의 경우, 자신의 소비수준에 비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직접 소비활동에 이용

5) 여기에서는 개인부문과 법인부문의 자산이익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함

되지 않는 소득을 굳이 세 부담이 높은 개인소득의 형태로 벌어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

- 또한 법인 명의로 이익을 소유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소비지출은 Fringe Benefits의 형태로 법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기도 함. 그러므로 고소득층의 경우 개인자산 혹은 소득의 법인귀속은 자신의 세후소득을 보다 빠르게 증가시키는 방법
- 개인자산과 이득의 법인귀속은 개인소득의 형태를 이자 및 배당 소득 혹은 양도소득의 형태로 전환하는 효과도 발생
- 장기적으로 각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소득의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구조

III 정책제언(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과제별로 기술)

- (제안1)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의 변경은 상호간의 세율격차를 고려하여 결정
 - 향후 개인소득세율 혹은 법인소득세율의 결정논의에서 특정 세목에 국한된 논의를 지양하며 두 세목간의 세원이동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 논의구조 형성 필요
 - 소득형태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최종 근로자 혹은 주주단계의 세부담 수준을 맞추어야 함
 - (정책사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배제 등
 - 개인사업체의 법인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축소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 등 각종 Fringe Benefits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
- (제안2) 개인 및 법인소득세간 세원이동을 고려한 세수추계 모형으로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소득세 부담의 변화는 소유자 경영인의 소득형태 변화를 유발하므로 세부담 변경이 일어나는 해당 세목뿐만 아니라 세원이동이 일어나는 다른 세목의 세원변화를 야기하므로 두 세목의 세수변동을 함께 고려하여

야 함

- 변화되는 세목만의 고려는 세수의 과대평가를 야기하므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제안3) 법인내의 소득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개발로 소득분배의 정확도 제고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법인내 저축할 경우, 그 소득은 소득분배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소득에 기준한 기존 통계의 정확도 저하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계층은 주로 고소득층이므로 기존 통계는 소득분배 격차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향 존재
- 법인을 통한 소득저축을 고려할 수 있는 보완지표 개발을 통해 소득분배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

IV 기대효과(정책제언에 따른 종합적 구체적 기대효과 작성)

□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원이동을 고려한 세부담 조정을 통해 조세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

- 단일 세목만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효과(즉 세수효과)의 과대평가를 회피함으로써 기대 정책효과를 잘 파악할 수 있음
- 두 세목간 불필요한 세원이동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세부담 축소를 위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비용을 축소, 즉 조세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주주의 최종 세부담과 노동소득의 세부담 격차를 줄임으로 과도한 법인부문의 소득이동 유인을 축소

□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조세정책의 효과성 제고

-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조세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높임

□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소득분배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등 정부정책의 타당성 제고

- 소득분배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기여가능

참고문헌

- 전승훈·홍인기,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연구」, 『노동정책연구』, 제9권 1호, 2009, pp. 55~98.
- 심욱기, 「2002년 세율인하 정책을 이용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분석」, 『제7차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2006.
- 나성린·남재량·문춘걸,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7, 2002. pp. 3~25.
- 전병목,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_____,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3.
- 전병목·장용성, 『조세 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3.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자료」, 2013.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2013.
- Alstadsater, Annette and Martin Jacob, “Income Shifting in Sweden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3:12 Rules,”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12.
- Alstadsater, Annette and Knut Reidar Wangen, “Small Corporations’ Income Shifting Through Choice of Ownership Structure-A Norwegian Case,” *Finnish Economic Papers*, Vol. 23, No. 2, 2010.
- Chetty, Raj and Emmanuel Saez, “Dividend Taxes and Corporate Behavior. Evidence from the 2003 Dividend Tax Cu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0, 2005, pp. 791~833.
- Chetty, Raj, Adam Looney, and Kory Kroft, “Salience and Taxation: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 2009, pp. 1145~1177.
- Egger, Peter, “Christian Keuschinigg and Hannes Winner, Incorporation and

- Taxation: Theory and Firm-level Evidence," Discussion paper no. 2008-20,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t. Gallen, 2008.
- Finkelstein, Amy, "EZ-Tax: Tax Saliency and Tax Rat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4, 2009, pp. 969~1010.
- Fjarli, Eric and Diderik Lund, "The Choice between Owner's Wages and Dividends under the Dual Income Tax," *Finnish Economic Papers*, Vol. 14, No. 2, 2001.
- Gentry, William, "Taxes, Financial Decisions and Organizational Form; Evidence from Publicly Traded Partnership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3, 1994, pp. 223~244.
- Goolsbee, Austan, "Taxes, Organizational Form and the Dead Weight Los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69, 1998, pp. 143~152.
- Goolsbee, Austan, "The Impa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Evidence from State Organizational Form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 2004, pp. 2283~2299.
- Gordon, Roger and Jeffrey MacKie-Mason, "Tax Distortions to the Choice of Organizational 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5, 1994, pp. 279~306.
- _____, "The Importance of Income Shifting to the Design and Analysis of Tax Policy," *Tax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Edited by Martin Feldstein, James R. Hines Jr., R. Glenn Hubbar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p. 29~38.
- Gordon, Roger and Joel Slemrod, "Are "Real" Responses to Taxes Simply Income Shifting between Corporate and Personal Tax Bases?," NBER Working Paper, NO. 6576, 1998.
- Kleven, Henrik, Martin Knudsen, Claus Kreiner, Soren Petersen, and Emmanuel Saez, "Unwilling or Unable to Cheat? Evidence from a Tax Audit Experiment in Denmark," *Econometrica*, Vol. 79, 2011, pp. 651~692.
- Saez, Emmanuel, Joel Slemrod and Seth Giertz,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50, 2012, pp. 3~50.

Sandmo, Agnar, "The Theory of Tax Evasion:A Retrospective View," *National Tax Journal*, Vol. 58, 2005, pp. 543~663.

Slemrod, Joel, "Income Creation or Income Shifting? Behavioral Responses to the Tax Reform Act of 1986,"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1995, pp. 175~180.

Stiglitz, Joseph, "The General Theory of Tax Avoidance, Evasion, and Administr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38, 1985, pp. 325~338.

작성자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02-2186-2217)